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덕의원 외 7명	1

(2012. 5.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8일

나. 제 출 자 : 조영덕 의원 외 7명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5월 11일

나. 의안번호 : 12-30

4.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퇴직연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부여되어 사실상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공로연수가 없고,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정직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 나누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24조제12항에서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를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함.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없는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퇴직직전 3개월간을 퇴직준비기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퇴직준비를 위한 별정직을 대직하기 위해서는 정원 외의 인력을 3개월 전에 신규 임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물론 퇴직준비기간 3개월은 일반직의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로연수기간에 비해 짧아 3개월을 60의 일수로 산정하여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기에 퇴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별정직에 대한 퇴직관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됨.